북한법제분석 95-2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

연구자 : 朴相哲(首席硏究員)
金昌奎(先任硏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Ⅰ. 序 言 7

Ⅱ. 舊社會主義國家圈의 環境保護關係法 立法態度 9

Ⅲ. 北韓의 環境政策과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沿革 11

1. 北韓의 環境政策과 立法動向 11

2.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沿革 14

Ⅳ.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의 分析 15

1.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構造 15

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第57條의 內容 17

3. 「環境保護法」의 分析 17

(1)「環境保護法」의 構成 17

(2)環境保護의 基本原則 18

(3)自然環境의 保存과 造成 20

(4)環境汚染防止 21

(5)環境保護에 대한 指導管理體系 25

(6)環境被害에 대한 損害補償 및 制裁 27

4. 「土地法」의 環境關係條項의 內容 28

(1)「土地法」과 「環境保護法」 第9條 28

(2)環境關係條項의 內容 29

5. 其他 環境保護關聯規定 30

(1)「山林法」·「地下資源法」·「建設法」 등 關聯規定의 內容 30

(2)「文化遺物保護法」등 文化財保護關係法制 32
(3)「外國人投資法」등 外國人投資關係法制 33
(4)「人民保健法」關係條項의 內容 33

Ⅴ. 南·北韓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比較·分析 35

1. 우리나라의 環境政策과 環境關聯法律의 立法推移 35

2. 南·北韓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比較·分析 40

(1)憲法規定의 比較 40
(2)立法形式의 比較 40
(3)立法趣旨의 比較 41
(4)保護管理體系의 比較 43

Ⅵ. 結 語 : 統一環境法制의 立法方向 模索 45

I. 序 言

오늘날 통일문제는 분단해소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각 분야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통일과 환경'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전망의 수준을 벗어나 통일환경법제를 논의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1987년 UN은 각국의 낙후된 현재의 환경관계 국내법령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 바[1] 있었는데, 이는 환경문제가 전지구촌의 중대한 해결과제로 등장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제국의 앞선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금도 부단히 수정·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가 전지구촌의 문제라면 남북분단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환경정책이 통일지향적인 성격을 띄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구사회주의국가권이 환경정책을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있어서 중대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과제로 일찍이 법제화[2]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을 때 심각한 환경훼손실태를 드러내었다는 점과 독일통일과정에서 환경통합비용의 과다소모는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환경오염실태는 중공업에 편중된 낙후한 산업시설, 왜곡된 환경문제인식과 낮은 환경의식수준, 비현실적이고 단순한 환경법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3]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보호정책의 실패에 따르는 환경오염문제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서서히 누적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에 더욱 노력하여야

---

1) 「Our Common Future」 Ⅲ,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ment).
2)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Ⅱ장을 참조.
3)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Ⅲ-1을 참조.

한다는 환경관(環境觀)에 입각하여 향후 남북한 통일시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불가역적 상황을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분석은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주요대상으로 하며, 그밖에 북한 환경법제의 구조상 개별환경법에 해당되는 「토지법」, 그리고 환경보호관련법규정으로서 '문화재보호관계법제', '외국인투자법제', 「산림법」, 「지하자원법」, 「건설법」 등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분석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다른 분야의 북한관련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환경실태에 대한 제1차 자료와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정확한 입법목적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1986년에 제정한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법을 채택할 때 정무원에 그 집행사항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환경보호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증폭되고 있다.

둘째, 북한법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은 곤란을 겪는 '북한법의 무규범성(無規範性)' 현상이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에도 무수히 산재되어 있어 북한의 환경법제분석에 비과학성이 전제될 수 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7조는 '반핵평화주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핵정책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일탈한 정치적 선전규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법제의 이러한 현상은 자칫 '북한법제의 분석'을 '북한법제의 홍보'로 전락시킬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많은 경계가 필요하다.

Ⅱ. 舊社會主義國家圈의 環境保護關係法 立法態度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는 자연과 인간간의 물질대사과정(물질교환과정)에 관한 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를 철저히 파괴하고 착란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 파괴된 교환과정을 인간이 의식적으로 재편할 객관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4] 이러한 사회주의국가권의 환경관(環境觀)은 1960·70년대에 제정된 구동구권의 신헌법들에 일찍이 반영되어 있다.[5]

1960년의 체코슬라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헌법 제15조제2항은 "국가는 인민복지의 가장 풍부한 원천과 근로자의 건강강화, 휴식에 바람직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연의 개선과 그 전면적 보호,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보전에 대하여 배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68년의 독일민주공화국헌법 제15조제1항·제2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토지는 최종적으로 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농지 및 산림은 그것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자연보호에 대하여 배려한다. 물 또는 대기의 청결유지, 동식물계 및 조국의 아름다운 경치보호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각 시민의 임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1년의 불가리아 인민공화국헌법은 "토지는 기본적인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으로서 보호되고, 사회에 따라 가장 유익한 형태로 이용된다(제30조제1항).", "자연 및 천연자원·물·대기·토양, 문화적 기념물의 보호·보전은 국가기관·국유기업·협동조합·사회단체의 의무이고, 모든 시민의 책무이다(제3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生野一路, "ソ連邦における自然保護と資源利用", 社會主義研究會編, 『社會主義國における自然保護と資源利用』, 法律文化社, 社會主義法研究年寶 No. 3(1975), 1~2면.

5) 稻子恒夫, "社會主義諸國における自然保護法", 社會主義研究會編, 『社會主義國における自然保護と資源利用』, 法律文化社, 社會主義法研究年寶 No. 3(1975), 1~2면.

1972년의 개정 헝가리 인민공화국헌법은 "헝가리인민공화국에 있어서 시민은 생명·신체의 보전 및 건강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헝가리인민공화국은 노동보호·보건시설·의료서비스 및 인간환경의 보호를 조직함에 의하여 보장된다(제57조제1항·제2항).", "헝가리인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는 인민재산의 보호, 사회적 소유의 강화,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경제력 강화, 자기 자신의 교육수준 향상, 국가 천연자원의 부 및 문화재의 보호, 사회체제의 강화이다(제6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4년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 제87조는 "근로인민, 시민, 연합노동조직,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 지방적 공동체 및 기타의 자치단체는 인간환경의 천연·인공의 가치보전과 개선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고, 대기·토양·물의 오염, 소음과 대기·토양·물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되며, 인간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유사한 것을 방지 또는 제거할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사회주의국가권의 자연보호 내지 환경관은 모든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당연시하고 자연을 사회화된 인간과 결합한 생산성제고의 측면에서 접근한 나머지 오늘날 구사회주의국가권의 환경실태는 오히려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자연보호가 자연이용으로 전락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사회주의국가권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경우 구동구권과는 달리 환경보호관련법제의 입법이 취약한데, 이는 동양사회의 비법(非法)적 접근이라는 입법관행 외에 구동구권의 사회주의혁명이 공업화된 유럽사회를 배경으로 한 반면 중국과 북한은 아시아적 생산양식[6]이 지배하는 농경사회를 그 배경으로 한 점에서 연유한 듯하다.

---

6) 자세한 내용은 L.Kolakowski, 『Current of Marxism』(박상철 역, 「콜라코프스키의 마르크스주의 I」, 훈겨레, 1989, 540면 이하)를 참조.

Ⅲ. 北韓의 環境政策과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沿革

1. 北韓의 環境政策과 立法動向

북한에서 환경정책의 전개는 1986년 4월 6일 「환경보호법」을 채택, 법제화되고 1992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 제57조에 명문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이 1977년, 중국의 「환경보호법」이 1979년, 일본의 「공해대책기본법」이 1967년에 제정된 것과 비교할 때 10년 내지 20년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이 환경문제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시기와 사회경제발전 속도가 낙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자급자족경제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노동력과 자원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만성화를 초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환경오염실태 가운데 대기·수질·해양 등의 오염과 토양자정능력 저하, 그리고 동·식물의 남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 제2차 자료[7]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4대군사노선」에 의한 전국토의 요새화, 1976년 채택된 「자연개조5대방침」 가운데 '다락밭건설사업'과 1980년대 10대 전망목표로 추진한 '새땅찾기 사업'의 농업진흥책과 같이 양곡양산을 위한 산림파괴 및 토양침식 등 현실적인 경제사정에서 초래되기도 하였고, 북한의 명승지에 새겨지는 김일성-김정일 찬양문구를 '자연바위글발'이라고 하여 '기념비 서예의 한 구성분야'로서 합법화[8]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소련형 공업화 모델에

---

7) 손기영, "북한의 환경정책과 환경실태"(한국정치학회, 「지속적 성장과 환경보호 정책」, 1995.8) ; 남영숙, "남북한 환경분야 상호협력방안"(「통일과 환경」 1995년 가을).

8) 한국법제연구원,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1995), 35면.

입각한 북한의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낮은 환경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공업을 무시한 중화학공업 편중구조로서 환경문제에 관한 한 지극히 위훼적인 요인을 원천적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중화학공업이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환경정화시설의 낙후 등이 현상적인 측면이라면, 주민의 소비부문을 도외시함으로써 야기되는 북한주민의 낮은 환경의식수준은 의식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중공업 등 2차산업이 강조되는 산업구조에서는 에너지의 양산과 경제성장에의 노력이 중요한 사회지표가 되어 자아실현의 욕구나 다양한 소비의욕 등이 상대적으로 죄악시되는 산업사회적 병폐현상[9]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환경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산업구조와 환경의식수준은 환경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처에도 소홀하게 되어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보호법」 제정을 전후하여 북한은 외형적으로 매우 활발한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하면서 1992년 헌법개정시 이를 명문화하고, 1990년대 제정된 일련의 외국인투자관계법제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규제를 입법화하여 UN에서 결정한 6월 5일의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성대히 치루고 있다. 1993년의 기념행사에서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구환경변화와 민족적 임무를 강조하고,[10]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북한의 환경보호정책 내지 노력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국가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1986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했다. 그래서 매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의 환경을 특히 정비하고, 노동자의 복리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국토관리총국 산림관리국에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봄에 전국적으로 5만여 헥타르(*ha*)의 땅에 2억 8천만목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주요 산업

9) 한국법제연구원, 『'94國民法意識調査研究』(1994), 67면.
10) 『로동신문』, 1993. 6. 4.

지구와 주민지구에 수천*ha*의 공원림이 조성되었다. 각지에 경제림(經濟林), 유지림(油脂林), 풍치림(風致林)이 조성되고, 도시와 농촌에 수십만 평방미터(m^2)의 공원, 유원지, 백화원(百花園)이 건설되었다 ……

현재, 국가의 대기오염측정치는 국제적인 대기보호한계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고, 물·토양의 위생기준도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달하고 있다 ……

대화학공장과 제철소의 구내에까지 꿩이 날아들고 다양한 조류가 살고 있으며, 하천과 호수에 수많은 어류가 헤엄치고 있다.

현재, 공화국에는 6개의 자연보호구와 29개의 동식물보호구, 10개의 해조(海鳥)번식보호와 수산자원보호구가 설정되어 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자연보호구는 세계적 명승지로서 널리 알려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보호문제를 인류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보는 국가는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는 일련의 과학기술적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11]"

이와 같은 북한의 노력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왕성하여 20여개의 국제환경조약에 가입하기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5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사회과학원의 한 전문가는 반핵평화 및 생명운동을 주창하기도 하였다.[12]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를 곧 북한의 환경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산업구조 및 환경의식이 종전과 여전하다는 점과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법제화 수준이 매우 미흡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은 입법화단계 보다는 운동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1) 『朝鮮通信』, (주)朝鮮通信社, 東京, 1993. 6. 7, 8~9면.

12) 윤문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핵평화위원회 위원, 사회과학원 연구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환경과 발전"(『배달환경』, 1995.11, 통권 제40호, 18~24면).

2.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沿革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는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이 채택되기 이전까지는 자연환경보호에 관하여는 1977년의 「토지법」, 생활환경보호에 대하여는 1980년의 「인민보건법」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천연자원의 보전과 문화재보호차원에서 1946년의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보물·고적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규칙」(1946.4.29),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수속」(1946.4.29), 1948년의 「물질문화유물보존에관한규정」 등에 환경보호관계규정이 일부 산재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1946년 「오물청소규칙」이 임시인민위원회 보건국 지령(指令)으로서 토지건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오물청소의무, 건물소유자의 배수로 설치 및 수리 의무 등을 규정한 관련법령이 있었다.

특히, 「오물청소규칙」은 196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오물청소법」(1961.12.30)과 매우 유사한 내용과 법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Ⅳ.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의 分析

1.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構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1986년 4월 9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조선로동당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옹호 관철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며 후대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풍부한 재부를 물려줄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 담보"의 성격을 띠는 「환경보호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환경보호법」은 북한환경보호관계법제의 기본법에 해당되며, 환경관련 모든 사항을 이 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환경관련 단일법으로 볼 수 있다. 「환경보호법」의 시행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법을 채택할 때 정무원에 그 집행사항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환경보호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아직 그 시행령의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입수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관련 단일법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보호문제에 관한한 이 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법의 적용범위는 제9조에서 대기·물·토양·생물 등의 환경보호사항에 국한하고, 토지와 산림자원 등의 자연환경에 관하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법(이하 「토지법」이라함)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토지법」도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의 주요법령으로서 그 규범력을 갖는다.

그 밖에 북한의 환경보호관련법규[13]로서는 「외국인투자법(1992)」·「합영법시행세칙(1992)」·「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1994)」·「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자유무역항규정(1994)」·「토지임대법(1993)」 등의 북한외국인투자관계법,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1990)」·「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1990)」·「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

13)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Ⅳ-5를 참조.

정(199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1994)」 등의 북한 문화재보호관계법, 「건설법(1993)」·「산림법(1992)」·「지하자원법(1993)」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는 북한의 현행 헌법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규정을 그 규범력의 근거로 하고 있는데, 북한법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헌법 제11조[14]와 「환경보호법」 제2조에서 천명하듯이 조선로동당의 환경보호정책이 보다 상위의 근거규범이 되고 있다.

다음에서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구조와 적용범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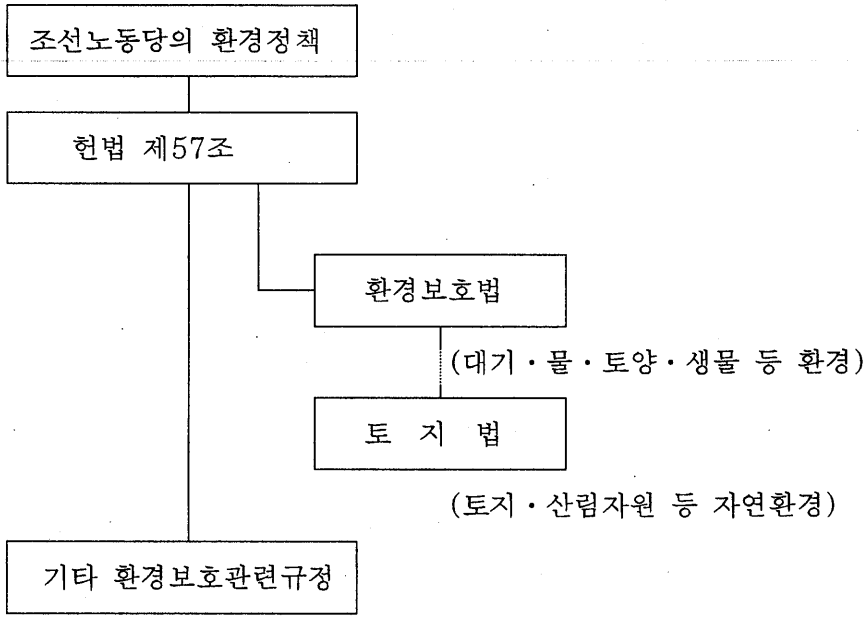

14)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第57條의 內容

북한 헌법상의 환경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서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라는 규정은 1992년 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1948·1962·1972년 등의 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관련규정으로서 1980년대 접어 들어 달라진 북한환경정책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임무 가운데 인민의 노동조건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라고 환경권의 기본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어서 북한헌법의 환경관련규정은 공해배제·생활환경조성 등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環境保護法」의 分析

(1)「環境保護法」의 構成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 「환경오염방지」, 제4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제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등 총 8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법제의 기본법에 해당되는 「환경정책기본법」(1990. 8.1)이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 제3장 「법제 및 재

정상의 조치」,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보전협회」,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입법방식에 있어서 매우 대조적이다.

환경법제의 입법방식은 크게 모든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형태와 오염매체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여러 개의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복수법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복수법 형태를 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일법형태를 취하고 있다.[15] 북한의 경우 아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법제 수준이 개발도상국형태이어서 복수법형태를 택하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환경보호법」이라는 단일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토지·산림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토지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토지법」이 토지·산림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개별환경보호법제라기 보다는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규정인 「토지법」중 관련법령에 불과할 뿐이다.

(2) 環境保護의 基本原則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서 국가의 역할(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인민의 의무(제5조), 반핵주의(제7조), 환경정책의 주체화(제8조), 적용범위(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국가의 역할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짓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대책을 따르며 이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이는 것을 국가의 역할로 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역할로서 환경보호관리사업의 계획적 전망, 산업시설의 재배치, 공해방지대책의 수립, 환경보호과학기관에 대한 지도강화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

15) 김창규, "환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본』 1994, 한양대학교), 77면.

(나) 인민의 의무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전체인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천명하고 인민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사업들을 국가로 하여금 강력히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 반핵주의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제7조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라고 규정하고, 환경정책의 반핵주의를 선언함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법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은 곤란을 겪는 '북한법의 무규범성(無規範性)'현상으로서 북한법제분석을 통한 북한현실의 파악이라는 법분석의 제1차적 목적성을 상실케 하는 규정이다. 핵무기 개발과 시험, 사용 등을 전제로 한 최근 북한 핵정책을 감안할 때 「환경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일탈한 정치적 선전규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라) 환경정책의 국제화

「환경보호법」은 환경정책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제8조에서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적용범위

「환경보호법」의 적용범에 대하여 제9조에서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1977)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自然環境의 保存과 造成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10조 내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1991.12.31)에 해당되어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生物種)의 멸종을 방지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규정들이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정무원에서 정하는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두고 국토관리기관과 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안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원칙을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에 대하여 다음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다.

○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함.

○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 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함.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음.

○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은 잡을 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은 해당 환경보호 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뜯을 수 없으며, 모든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캐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도시관리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 주변과 구획안의 빈 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 록지면적을 늘여야 하며, 도시 안과 그 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심을 수 없음.

○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계기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함.

(4) 環境汚染防止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제3장에서 환경오염방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보호관계법제가 환경보전과 폐기물관리 등에 있어서 개별입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부문이다.

「환경보호법」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공해방지의 선결조건으로 천명하며 정무원으로 하여금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진동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규제대상으로는 대기오염, 물오염(해양오염 포함), 농약오염, 방사성물질오염, 소음·진동공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대기오염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 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력과 장치를 갖추며 로와 탕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하고,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 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림을 조성하여야 함.

○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자동할 수 없고,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요거리와 필요한 지역에 현대적인 배기가스 측정수단을 갖추며 륜전기재의 가스, 연기 배출상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량을 줄이며 륜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하며, 기상수문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함.

(나) 물오염(해양오염 포함)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물오염(해양오염 포함)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기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을 정화하며 그것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먹는 물을 잘 려과 소독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울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음.

○ 모든 배들은 공화국 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강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기름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하며, 자원개발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기관은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함.

○ 배 운영기관은 배에다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또는 오수, 오물 저장용기를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함.

○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오수와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의 오수와 오물을 실어내며 바다물과 강물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함.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의 침전지, 정화장과 오물, 공업 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먹는 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정하여야 하고, 박토장[16], 버럭장[17], 저탄장[18], 연재 및 광재 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리용한 뒤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함.

(다) 농약오염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농약오염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으며, 농약에 대한 독성검

16) 박토장은 "광산이나 탄광에서 박토작업(깊지않은 지하유용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로천채굴장에서 땅겉면층을 파제끼는 일)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조선말대사전1, 사회과학출판사(평양), 1992, 1287면).

17) 버럭장은 "버럭(광산이나 탄광에서 쇠돌이나 석탄을 캘 때 나오는 쓸모없는 잡돌이나 잡것)을 내다 부리우는 곳"을 의미한다(위의 책, 1360면).

18) 저탄장은 "석탄을 저장하여 두는 마당 또는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평양), 1992, 113면).

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함.

○ 농업지도기관과 농약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농약이 공기 중에 날리거나 강하천, 호소, 저수지, 바다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때에는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방사능물질오염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방사능물질오염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릴 물, 폐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려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하며,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위 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여 오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함.

○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관리, 사용 및 폐기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기관의 방사성물질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사선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함.

(마) 소음·진동공해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공해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주는 설비와 기술을 수입하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음.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음.

(바) 기 타

이외에 수입규제와 공장지역배치 및 국가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각각 제34조의 "오염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과 집짐승먹이는 수입할 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37조의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기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 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 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은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나뭇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도로 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하되 도시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이 수시로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우리의 쓰레기종량제와는 판이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5)環境保護에 대한 指導管理體系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 및 그 체계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 법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크게 감독사업부문·조직지도사업부문·지도관리협조부문 등 세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환경보호에 대한 조직지도사업부문에 있어서 통일적 지도는 조선노동당 영도하에 정무원이 주도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 주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산하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을 두고 있으나 이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는 현재 국가환경보호위원회로

개칭하여 상설화되고 있다.[19]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환경보호감독기관들인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하는데, 이 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구체적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 : 환경의 손상과 오염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년차별계획을 세워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심사기관 :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과 지형조건, 해양조건 같은 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준비하여야 함.

○ 준공검사기관과 준공검사에 참가하는 기관 :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본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함.

○ 정무원 :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측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환경변화 상태에 대한 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함.

○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 :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함.

셋째, 환경보호지도관리를 위한 협조부문에 대하여 이 법 제41조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및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감독기관과 환경보호측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

19) 국가상설위원회는 1993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UN에 지구환경변화와 민족적 임무를 강조한 서한을 보내면서 공개된 바 있으며(『노동신문』, 1993.6.4), 1인의 의장과 3인의 부의장 그리고 8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로동행정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環境被害에 대한 損害補償 및 制裁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로서 손해보상, 손실보상[20], 원상회복, 억류, 벌금, 행정 및 형사적 책임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해보상책임 :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 손실보상책임 : 환경보호질서위반으로 손해를 본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환경보호감독기관이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킴.

○ 억류·벌금·손해보상책임 : 환경보호 감독기관과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나라의 배 또는 사람이 우리 나라의 령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켰을 때에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하며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림.

○ 원상회복·회수·행정 및 형사책임 : 환경보호감독기관은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 공장의 운영과 륜전기재의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킬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하는데 쓴 물자 생산물을 회수하며 손상, 파괴, 오염된 환경은 심히

---

20)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상」 또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개념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손상, 파괴, 오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책임있는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21]을 지운다.

4. 「土地法」의 環境關係條項의 內容

(1)「土地法」과 「環境保護法」 第9條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토지법」은 북한의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는데 그 주요 입법목적이 있다. 다만 이 법 제5조에서 밝히듯이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의 환경보호정책·수립에 있어서 토지와 관련하여 상당부문 환경보호를 위한 근거법령이 될 수 있고, 「토지법」을 「환경보호법」 제9조에서 "토지와 산림자연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규범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법」은 북한의 환경보호관리법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법」 제정 당시 「환경보호법」을 예견할 정도의 사회경제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환경보호적 조항도 상당하다. 특히 제49조의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라는 내용은 오늘날 북한의 수해피해외에 각종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토지법」은 「환경보호법」 제9조의 환경보호의 근거규범이 되고 있지만 입법목적 내지 내용에 비춰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법」과 같은 유사입법에 의하여 대체될 것으로 예견된다.

---

21) 현행 형법에서는 공해행위에 대하여 국토관리질서침해사범으로 규정하여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북한형법 제89조).

(2)環境關係條項의 內容

「토지법」은 국토건설총계획을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주요 준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토지법」 가운데 중요한 환경관계조항으로서 다음과 같다.

○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함.

○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함.

○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 나라의 인민경제 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 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함.

○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을 30~50년으로 함(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음).

○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

○ 토지를 정리개량하고 보호하며, 새 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을 강구함.

○ 산림조성 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

○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 방향,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의 배치 및 종합적 리용대책을 강구함.

○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을 강구함.

○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 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를 강구함.

○ 도시와 마을, 휴양지, 요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물의 보호대책을 강구함.

○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

○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

5. 其他 環境保護關聯規定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1992년의 헌법에 환경관계조항이 규정되면서 북한의 환경보호관련규정은 여러가지 관계법령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형태에 있어서 환경개별입법형식 보다는 다른 입법영역에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주요 환경보호관련규정으로는 「산림법」, 「지하자원법」, 「건설법」 등과 문화재보호관계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 등이 있다. 그리고 1980년에 제정된 「인민보건법」이 있다.

(1)「山林法」·「地下資源法」·「建設法」 등 關聯規定의 內容

최근에 제정된 「산림법」(1992.12.11)·「지하자원법」(1993.4.8)·「건설법」(1993.12.11)은 그 입법목적,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총계획 작성과 실현, 건설 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

보호관계법제와는 전여 무관하지만 「토지법」과 마찬가지로 이들 내용중 환경보호관련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넓게 북한의 환경보호법제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림토지와 동·식물 자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림법」 중 제25조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없이 산림구역에 도로, 건물,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할 수 없으며 산림구역에서 산을 일구거나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어 산림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의 "국토관리기관,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더기비, 사태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사방야계공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27조의 "국토관리기관과 림업기관은 자연보호림구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림구가 아니라도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해당 산림구역에서 집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의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등의 내용은 주요 환경보호관련규정이다.

그리고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 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31조)"의 「지하자원법」과 "시공과정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법」 또한 주요 환경보호관련법규들이다. 특히 「건설법」은 건설총계획을 「토지법」상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르도록 하여 다음의 12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영원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력사 유적, 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 방향과 규모를 정하여야 함.

○ 공장, 기업소를 원료, 연료 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함.

○ 도시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며 수도를 비롯한 큰 도시주변에는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지금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함.

○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함.

○ 산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건설부지의 리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여야 함.

○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며 립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조선식건물보존구획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함.

○ 지하실시설망건설을 앞세우며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공해를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함.

(2)「文化遺物保護法」등 文化財保護關係法制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는 문화재 내지 문화유물을 원상태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환경보호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관련법령들로는 역사유적과 역사유물의 보호·관리에 적용되는 「문화유물보호법(1994)」과 기념물(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1990)」, 그리고 명승지의 보호관리를 위한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1990)」 등이 있다. 이들 법령들은 앞에서 언급한 「산림법」·「지하자원법」·「건설법」 등과 같이 특히 자연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계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3)「外國人投資法」등 外國人投資關係法制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을 위한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관계법제들을 대대적으로 제정 내지 개정하였는데, 향후 예측되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들을 두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외국인투자법(1992.10.5)」 제11조에서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합영법시행세칙」 제5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1994.3.27)」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2.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1.31)」 제17조에서 "…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자유무역항규정(1994.4.28)」 제25조에서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 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 …, 5. 피치[22],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임대법(1993.10.27)」 제3조에서 "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 이에 해당된다.

(4)「人民保健法」關係條項의 內容

북한헌법 제57조는 환경보호의 목적중 하나로서 노동조건의 향상을 지적

22) 피치는 "석탄타르나 원유 등을 증류할 때 찌끼로 나는 검은 물질"을 의미한다(조선말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854면).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환경정책이 자연환경보호 못지않게 생활환경보호에 크게 치중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의 개선은 노동력의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의 극대화를 지향하였던 바 1980년에 제정된 북한의 「인민보건법」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1986년 「환경보호법」이 환경법제의 기본법으로 채택되기 이전 북한에서 환경보호의 주요목적은 생활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북한의 환경보호법체계는 보건복지법체계와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였다. 「인민보건법」 제1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무병장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다"라는 규정에서 살펴보듯이 「인민보건법」이 현행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 법의 제정 당시 「환경보호법」과 같은 환경법제관련 기본법의 부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보호관련조항들이 상당수 있다.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보호하는 것은 예방의학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보건기관을 비롯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위생문화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제19조)", "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의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공공시설물을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배치하고 건설하며 그 관리를 잘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제20조)", "국가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는다. 공장, 기업소와 해당 기관들은 가로수와 록지를 많이 조성하며 여러 가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 강하천, 토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21조)" 등의 조항들이 이에 해당된다.

Ⅴ. 南·北韓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比較·分析

1. 우리나라의 環境政策과 環境關聯法律의 立法推移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분석에 이어 남·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를 비교하는 목적은 향후 환경문제관련 남북한 상호교류와 궁극적으로 통일환경법제를 마련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상정할 때 완전한 흡수통합을 배제하는 한 양측의 이질적인 환경정책과 그 법체계를 정확히 확인할 때 불필요한 상호 오해와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입법은 60년대초 「오물청소법」(1961.12.30)·「공해방지법」(1963.11.15) 등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제개발 및 성장정책을 최우선시하던 당시 정부의 정책의지와 사회경제적 분위기하에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소홀하고 안이한 자세는 오랫동안 환경관련입법의 공백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에 있어서도 국제적 감각을 상실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환경문제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급기야 환경문제가 국가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자 우리의 기존 태도에도 일대변혁이 일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태도변화는 환경관련입법의 추이와 행정기구의 확대에 반영되었는데, 그 전개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관련법률의 입법추이>

구 분	날 짜	공포번호	입 법 내 용	비 고
환경보전관련법	1963.11.15	법률 1436	공해방지법 제정	71.1.22. 전면개정 공해방지법 폐지, 79.12.28(환경영향평가제 도입), 81.12.31, 86.12.31 89.12.30 개정
	1977.12.31	법률 3078	환경보전법 제정	
	1977.12.31	법률 3079	해양오염방지법 제정	91.3.8 전면개정
	1983. 5.21	법률 3657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제정	87.11.28 환경관리공단법으로 명칭변경 및 개정, 89.12.30, 90. 8.1, 91.3.8, 92.12.8, 93.12.27, 94.1.5, 95.8.4 개정
	1990.8.1	법률 4257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환경보전법 폐지, 90.8.31, 91.12.31, 93.6.11, 94.12.22 개정
		법률 4262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91.5.31, 92.12.8, 93.6.11, 93.12.27, 94.1.5 개정, 92.8.17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4258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정	
		법률 4259	소음진동규제법 제정	92. 8.18 소음진동법중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2.12.8, 93.6.11, 93.12.27 개정

구 분	날 짜	공포번호	입 법 내 용	비 고
환경보전관련법		법률 4260	수질환경보전법 제정	91.5.31 개정 92.8.18 수질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2.12.8, 93.12.27, 94.1.5, 94.8.3
		법률 426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95.8.4 개정
	1991. 3. 8	법률 4365	해양오염방지법 전면개정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폐지 94.8.3 개정
	1991.12.31	법률 449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	
	1991.12.31	법률 4492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93.6.11 개정
	1993.6.11	법률 4467	환경영향평가법	94.1.5 개정 94.8.3 개정
	1992.10.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92.6.11 환경영향평가법안 입법예고
	1993.12.27	법률 4655	한국자원재생공사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폐지
	1994. 1. 5	법률 4714	환경개선회계특별법	
	1994.12.11	법률 483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94.1.5 개정
	1995. 1. 5	법률 4906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4908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1961.12.30	법률 914	오물청소법 제정	
	1979.12.28	법률 3182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정	89.12.30, 91.3.8 개정
	1986.12.31	법률 3904	폐기물관리법 제정	오물청소법 폐지
	1991.3.8	법률 4363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	92.12.8, 93.3.6, 94.1.5, 95.8.4 개정
	1991.3.8	법률 4364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 제정	93.12.27, 94.1.5 개정
	1992.12.8	법률 4534	폐기물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92.7.30 입법예고 94. 1.5 개정
		법률 4538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2.9.1 입법예고 93.12.27,94.1.5,94.8.4 개정
	1995.1.5	법률 4907	폐기물처리시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구 분	날 짜	공포번호	입 법 내 용	비 고
피해구제 및 환경범죄	1990.8.1	법률 4390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한 고의범과 업무상 과실범을 처벌
	1990.8.1	법률 4258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정	
	1992.6.1		형법개정법률(안)	제246조(방사능물질방류 관련), 제27장 환경에 관한 죄 (제284~287조) 신설
	1992.8.2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정	

<환경관련행정기구의변천과정>

보건사회 환경위생과 공해계설치
(1967년 2월)

⇩

환경위생과를 차관직속의 위생관리(3급)으로 승격
(1970년 2월)

⇩

위생관리관을 위생국으로 개편. 공해과 신설
(1973년 3월)

⇩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
공해과를 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로 분리개편.
공해관리관(3급)신설
(1975년 8월)

⇩

공해관리관을 환경관리급(2급)으로 개편
(1977년 3월)

⇩

보건사회부 외청으로서 환경청 발족
(1980년 1월 15일)

⇩

지방환경지청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 신설
(1986년 10월)

⇩

환경청을 환경처(국무위원)로 승격.
지방환경지청을 지방환경청으로 승격
(1989년 12월 30일)

⇩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
환경정책의 집행기능을 보강함
(1994년 12월 23일)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관련입법이 당초 「환경보전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에서 오염매체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세분화되고 환경정책담당부서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향후 환경관계법제의 민주화 내지 국제화가 더욱 보강될 경우 법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환경보호관계법제의 선진화에 큰 기대를 갖게 된다.

2. 南·北韓 環境保護關係法制의 比較·分析

(1) 憲法規定의 比較

우리나라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문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권적 성격외에 국가와 국민의 의무로서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헌법 제57조의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명문규정은 우리헌법상 기본권보장부문에 해당하는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가 아닌 근본원칙(우리 헌법상 총강 부문에 해당함)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환경권의 기본권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헌법상 환경관련규정에서 공해배제·생활환경조성 등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적 기본권을 직접적 또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立法形式의 比較

북한법의 존재형식은 사회주의법의 대체적인 특징 외에 북한법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남·북한법제의 입법형식은 일반적으로도 대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남·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는 이외에도 서로 각각 대비되는 입법형식, 즉 환경관련 복수법형태(우리나라)와 단일법형태(북한)를 갖추고 있어서 남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입법형식은 매우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환경법제의 체제는 크게 조직일반·환경보전·폐기물관리 등 세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정부조직법」·「환경관리공단법」·「환경자

원재생공사법」(조직일반부문),「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환경기술개발및자원에관한법률」·「환경개선비용부담법」·「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수질환경보전법」·「먹는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환경개선특별회계법」(환경보전부문),「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폐기물관리부문) 등의 개별환경입법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단일법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는 기본적으로「환경보호법」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토지·지하자원·산림자원 등 자연환경보호와 관련하여는「토지법」·「산림법」·「지하자원법」·「건설법」 등에, 문화재보호 및 천연자원보호와 관련하여서는「문화유물보호법」·「력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 등에, 외국기업의 활동과 투자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하여는「외국인투자법」·「합영법시행세칙」·「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자유경제무역지대법」·「자유무역항규정」·「토지임대법」 등에, 생활환경보호와 관련하여는「인민보건법」 등에 해당사항을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단일법위주의 입법형식으로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환경정책이 정치적 선언적인 수준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선회를 할 경우 개별입법형식의 복수법형태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 立法趣旨의 比較

남·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입법취지를 비교·고찰한다는 것은 입법형식에 있어서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게 반감되지만, 남·북한

환경법제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북한의 「환경보호법」의 기본원칙과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비교·분석할 경우 향후 통일환경보호법제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입법취지를 비교·고찰할 경우 한편으로 공통된 기본목적과 이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판이한 입법취지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보호의 목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가치추구인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환경보호사업까지도 체제유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징표는 「환경보호법」 제7조의 「반핵평화주의」라는 무규범적 정치적 선언규정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환경보호관계법제의 입법취지〉

구 분	관 련 법 제	입 법 취 지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구 분	관 련 법 제	입 법 취 지
북 한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조선로동당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옹호 관철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며 후대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풍부한 재부를 물려줄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 담보로 된다.
	환 경 보 호 법	제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주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4)保護管理體系의 比較

남·북한의 환경보호관리체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분권기관) 관리의 엄격함이라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수립에 있어서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는 점 또한 북한의 정무원 산하의 '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환경보전에 있어서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의 원칙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23]에서는 환경보전협회,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들의 과학적인 조사

23) 북한의 경우도 오염자 부담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배출부과금 등과 같은 제

연구·기술개발 등에 규범력을 인정한 반면, 북한의 「환경보호법」상 환경보호관리체계에는 그러한 여지가 거의 없고 오히려 환경보호에 관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위한 교육 및 출판보도기관을 주요기관으로 명문화하는 단계에서 아직 환경보호관리체계가 계몽단계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북한의 환경행정은 농업과 관련된 사안은 농업위원회 기상수문국이, 주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은 보건국이, 산업·공장폐기물·중금속 등은 화학공업국이, 방사능·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업무는 원자력공업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는데[24] 우리의 환경행정체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환경행정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견된다.

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4) 정회성, "남북한 환경실태 및 협력방안", (「남북한환경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 1995.8.18, 한국환경기술개발원·환경부주최 학술세미나), 92면.

Ⅵ. 結 語 : 統一環境法制의 立法方向 模索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환경정책·환경의식·환경보호법제 등의 수준 및 방향은 우리와는 매우 현격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공업을 무시한 중화학공업 편중구조를 갖고 있는 북한의 산업구조, 북한주민의 낮은 환경의식수준, 비현실적이고 단순한 북한의 환경법체계 등을 감안할 때 섣불리 통일환경법제의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무모할 수 있다.

통일논의에 있어서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독일통합과정에 비추어 볼 때 통일비용 중 가장 큰 부담요인의 하나가 바로 환경통합비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 제1국가조약[25]을 통하여 동독의 환경법을 서독의 환경법에 상응되도록 조정하기로 하고 1990년 7월에 제정된 동독의 환경구조법(Umweltrahmengesetz) 또한 서독의 환경조건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연방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환경영향평가법, 연방Immission보호법, 폐수배출법, 수자원법, 폐기물법, 자연보호법, 원자력법, 화학물질법 등)의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모된 바 있었다.[26]

이러한 독일의 환경통합과정은 비용소모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지만 남·북한의 상호관계의 현단계는 독일의 통일조약체결단계와는 전혀 별개의 차원인 점에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한의 상호관계는 남북연합의 휠씬 이전, 즉 화해협력단계를 협상하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우리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가운데 남북연합 내지 통일국가단계에 해당되는 독일식의 환경통합법논의는 실익이 없다. 다만 향후 통일환경법제의 입법방향을 논의할 때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지하여 남북한간의 환경문제논의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마리를 풀어가

---

25) 자세한 내용은 박상철,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1994)의 부록을 참조.

26) 옛동독의 상태적 재건계획단계인 1990년말·1991년·1992년, 즉 2년여동안 약 9조 3천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첫번째의 시사로서 환경오염문제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서서히 누적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사후구제보다 사전적 예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인 바, 남북한 환경문제는 지금 부터라도 환경오염의 불가역적 특질에 주목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는 자세가 요망되며 이는 독일과 같이 통일직전 환경통합비용의 과도부담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통일환경정책은 통일정책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인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민주국가의 3단계 통일방식을 전제로 하여 단계별 통일환경법제의 기본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의 환경보호 내지 규제법규의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화해협력단계에서 통일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은 민족동질성 확보가 관건이 되므로 남북한의 환경정책 내지 환경법제는 그 목표와 추진방법에 있어서 구심력있는 상호접근이 긴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지나치게 남북한 공동체 의식에 사로 잡힌 나머지 남북한의 현행 환경보호관계법제의 이질성을 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선진화와 다양한 개별 환경법제의 입법화를 유도하거나 추진하는 방법으로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한의 환경보호 내지 규제법규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 경우 1991년에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6조 "남과 북은 …… 환경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은 '남과 북의 환경정책 또는 환경법제는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정·발전시킨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의 환경현실을 계량화하여 '남북분리·다단계 발전·통합지향' 형식의 남북연합 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단계를 화해협력의 연장선상이라기 보다는 통일민주국가 직전의 단계 내지 국가형태로 볼 때[27] 화해협력단계에서 이루어진 남북한의 환경

27)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상철, 『남북연합의 법적성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

문제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남북연합시기의 남북한의 환경통합정책은 통합을 지향하되 남북한이 자신의 환경문제를 서로 분리하여 통일비용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 환경통합과정에 나타난 환경통일비용의 과다소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통일민주국가로의 진입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장애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일정책에 따른 남북한 환경보호정책의 촉진방안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에 일방적으로 근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제를 통일지향적으로 정비하는데 자체 노력을 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다만 향후 남북한간의 「환경공동선언문」 채택과 같은 사안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장기적인 전망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

원, 1994), 67~72면을 참조.

附 錄 :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令

○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환경보호법
○ 오물청소규칙
○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토지법
○ 환경보호관련 개별법규정
- 헌 법 : 제57조
- 산림법 : 제1조, 제6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7조
- 건설법 :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33조
- 지하자원법 : 제1조, 제31조
- 인민보건법 : 제1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문화유물보호법 : 제1조
- 력사유적과유물보존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 천연기념물의보호관리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 명승지의보호관리및리용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 외국인투자법 : 제1조, 제11조
- 합영법시행세칙 : 제1조, 제5조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 제1조, 제9조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제1조, 제17조
- 자유무역항규정 : 제1조, 제25조
- 토지임대법 : 제1조, 제3조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86.4.9. 최고인민회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정확한 환경보호정책을 내놓고 전체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왔다.

지난 날 일제의 식민지 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천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는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흔적이 말끔히 가셔지고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환경이 참답게 보장되는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었다. 이것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잘 보호하며 적극 개조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새롭게 규제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조선로동당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옹호 관철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며 후대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풍부한 재부를 물려줄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 담보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채택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

환경보호법

(1986.4.9 최고인민회의)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며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4조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공해방지 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제8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 따른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둔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12조 국토관리기관과 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안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 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16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은 잡을 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은 해당 환경보호 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뜯을 수 없다.

모든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캐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도시관리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 주변과 구획안의 빈 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 록지면적을 늘여야 한다.

도시 안과 그 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계기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환경오염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국가의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0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 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력과 장치를 갖추며 로와 탕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 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다.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요거리와 필요한 지역에 현대적인 배기가스 측정수단을 갖추고 륜전기재의 가스, 연기 배출상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량을 줄이며 륜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나무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기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을 정화하며 그것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먹는 물을 잘 려과 소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제26조 모든 배들은 공화국 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강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기름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기관은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배 운영기관은 배에다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또는 온수, 오물 저장용기를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오수와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의 오수와 오물을 실어내며 바다물과 강물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제2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의 침전지, 정화장과 오물, 공업 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먹는 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정하여야 한다.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 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리용한 뒤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제31조 농업지도기관과 농약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농약이 공기 중에 날리거나 강하천, 호소, 저수지, 바다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때에는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 기체, 먼지, 버릴 물, 폐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려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위 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여 오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33조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관리, 사용 및 폐기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기관의 방사성물질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오염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과 집짐승먹이는 수입할 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주는 설비와 기술을 수입하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

제37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기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 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은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제38조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감독사업을 강화한다.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에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를 둔다.

제40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환경보호감독기관들인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한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및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감독기관과 환경보호측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정권기과는 환경의 손상과 오염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년차별계획을 세워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3조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심사기관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과 지형조건, 해양조건 같은 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준비하여야 한다.

제44조 준공검사기관과 준공검사에 참가하는 기관은 공해막이시설을 갖추

지 않은 기본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정무원은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측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환경변화 상태에 대한 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제47조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환경보호질서위반으로 손해를 본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환경보호감독기관이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킨다.

제50조 환경보호 감독기관과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나라의 배 또는 사람이 우리 나라의 령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켰을 때에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하며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1조 환경보호감독기관은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 공장의 운영과 륜전기재의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킬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하는데 쓴 물자 생산물을 회수한다.

손상, 파괴, 오염된 환경은 심히 손상, 파괴, 오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책임있는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오물청소규칙

(1946.7.4. 임시인민위원회 보건국 지령)

제1조 토지건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그 지역내의 인접도로의 오물(진개·오수·분뇨·재 등)을 청소할 의무가 있다.

제2조 건물의 소유자는 오수를 배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로를 축조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조 건물관리자는 매호마다 혹은 수호 공동으로 청결통을 비치하여 진개를 추적하여야 한다. 청결통은 타지 않은 재료로 하되 뚜껑을 요하며 수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관리자는 매호에 분뇨통이 있는 면소는 축조·수리하여 오액이 유출치 않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사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면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기 각조를 준수, 실시하도록 지도알선하며 수시로 감시할 것
2. 각호에 추적한 오물이 용기에 충만하기 전에 일정한 장소에 철출하여 처분할 것이며 오물처분에 의한 소득은 시·면인민위원회의 수입으로 할 것

제6조 특별한 이유없이 고의로 본 규칙에 위반한 자는 백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77.4.29. 최고인민회의)

우리 나라의 토지는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없어지고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으며 농민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되었으며 농업생산력은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빨리 발전하고 있다.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책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토지건설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 국가기관들,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토지를 보호하고 정리, 개량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정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국토개변과 토지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제 원칙과 요구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공화국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 국토개변과 토지보호관리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담보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토지법

(1977. 4. 29.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 밑에 〈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여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 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받친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으며 외래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다.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게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

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6조 국가는 우리나라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촌을 기계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한다.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 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제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관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 리용은 협동농장 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3.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 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 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1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을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개량하고 보호하며, 새 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 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 방향,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의 배치 및 종합적 리용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 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요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장 토지보호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유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 강과 중소 하천정리를 다같이 밀고 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 강과 중요 강, 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 하천의 정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정리는 큰물 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 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

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등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 보수관리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조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 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 파기와 강줄기 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 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벌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 휴식에 다방면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빼기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 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 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땔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의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여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땔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땔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 전망계획에 맞게 양모장을 꾸리며 나무모 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모장에는 인민경제적 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을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 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 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벤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

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 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여 필요한 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제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이를 비롯한 병충해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촌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의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처리장과 미광침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캘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캔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높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밭관개체계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 땅을 많이 얻어내여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사업을 년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의 뚝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 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 조건이 좋고 개간이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 관수체계, 화학적 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여 물 갈아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다.

지방행정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 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재료의 채취가 끝나는 데 따라 파헤친 자리에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 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가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반적 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 량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 가지 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 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 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보호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 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건설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연안, 령해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 령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토지관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어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없이 묵이거나 버릴 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 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해에 쓸 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 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 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 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지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가 한다.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행정위원회 또는 정무원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여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

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속에서 산림을 람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 이상 넓게 잡아 놓고 토지를 람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 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소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정무원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리용을 허가하여 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 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있게 리용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토

지문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여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보호건설 및 관리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책임을 진다.

환경보호관련 개별법규정

○ 헌 법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산림법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6조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19조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없이 산림구역에 도로, 건물,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할 수 없으며 산림구역에서 산을 일구거나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어 산림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국토관리기관,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더기비, 사태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사방야계공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림업기관은 자연보호림구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림구가 아니라도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해당 산림구역에서 집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구역에서 이로운 동물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 그것을 적극 보호, 증식시켜야 한다.

제37조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 건설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총계획 작성과 실현, 건설 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10조 건설총계획은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건설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세운다.

제11조 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영원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력사 유적, 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 방향과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장, 기업소를 원료, 연료 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5. 도시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며 수도를 비롯한 큰 도시주변에는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금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7.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8. 산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건설부지의 리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며 립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

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조선식건물보존구획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지하실시설망건설을 앞세우며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공해를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시공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시공하며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공과정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지하자원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3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 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인민보건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무병장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다.

제19조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보호하는 것은 예방의학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보건기관을 비롯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위생문화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거

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의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공공시설물을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배치하고 건설하며 그 관리를 잘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는다.

공장, 기업소와 해당 기관들은 가로수와 록지를 많이 조성하며 여러 가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 강하천, 토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문화유물보호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전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 력사유적과유물보존에관한규정(민주조선 1992.1.31/1992.2.4)

제1조(목적) : 지난 날 우리 인민들이 이룩하여 놓은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력사유적과 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

○ 천연기념물의보호관리에관한규정(민주조선 1990.6.30)

제1조(목적) : 천연기념물들을 잘 보호관리하고 리용함으로써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

○ 명승지의보호관리및리용에관한규정(민주조선 1990.6.24)

제1조(목적) : 나라의 명승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리용함으로써 우리 당의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또한 나라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다.

○ 외국인투자법

제1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1조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합영법시행세칙

제1조 이 세칙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서기가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 자유무역항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5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1)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켜...(미입수부분)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7) 료금을 정한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류치할 수 있다.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무선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지재 또는 배를 몰수한다.

○ 토지임대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 데 이바지한다.

제3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북한법제분석 95-2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

1995년 12월 25일 印刷
1995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3,000 원